

국가핵심기술, 산업기술, 영업비밀 유출사안 처벌수위 양형기준 대폭 강화 - 대법원 양형

위원회 2024. 1. 19. 의결내용 보도자료 개요



# 기술·영업비밀 유출범에 대한 처벌<최고 권고 징역형량> 어떻게 달라지나

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**18년** **신설**

산업기술 해외 유출 시 9년 → **15년**

국내 유출 시 6년 → **9년**

영업비밀 해외 유출 시 9년 → **12년**

국내 유출 시 6년 → **7년  
6개월**

### 03<sup>1</sup> 영업비밀 침해행위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국내침해	<del>10월</del> 6월 - 1년6월	<del>8월 - 2년</del> 10월 - 3년	<del>1년 - 4년</del> 2년 - 5년
2	국외침해	10월 - <del>1년6월</del> 3년	<del>1년 - 3년6월</del> 1년6월 - 5년	<del>2년 - 6년</del> 3년 - 8년

### 04<sup>1</sup>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누설·도용	- 8월	6월 - 1년6월	1년 - 3년6월
2	국내침해	8월 - 2년	1년 - 4년	2년6월 - 6년
3	산업기술 등 국외침해	1년 - 3년6월	2년 - 6년	4년 - 10년
4	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	2년 - 5년	3년 - 7년	5년 - 12년

## 기술 유출범 양형 기준 어떻게 바뀌니

#### 가중 처벌

**‘심각한 피해’ 대상 확대**

→ ‘상당한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기술 등’으로 확대

**‘비밀 유지 의무자’ 대상 확대**

→ ‘계약 관계 등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자’로 확대해 거래처·파견직원 등도 포함

**‘집행유예 안 내릴 주요 사유’ 대상 포함**

→ 기술 유출범의 실형 선고 가능성 커짐

#### 양형 감경

**‘초범 집행유예 고려’ 제외**

→ 형사처벌 전력 없어도 실형 가능성 커짐

**‘유출 전 회수’ 조건 엄격화**

→ 피해자가 돌려받아 폐기된 경우에만 엄격히 적용

**‘내부고발자’도 처벌 감경**

→ 범죄 가담자 내부신고 유도

③ **특별감경인자인 ‘영업비밀(기술)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’의 정의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여, 피고인이 영업비밀(기술)을 외부에 전혀 누설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유출된 영업비밀(기술)이 반환·폐기되어 결과불법이 낮은 경우에 한하여 위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도록 함**

- 영업비밀(기술)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결과불법이 낮은 점을 고려한 특별감경인자로, 기술유출범죄의 특성상 대부분 자료들이 디지털화되어 복제가 용이하므로 정의규정에서 유출된 정보가 반환·폐기된 경우임을 명확히 함
- 정의규정

**[영업비밀(기술)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]**

- 피고인이 취득한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외부로 전혀 누설하지 아니하고, **그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이 권리자(피해자)에게 반환·폐기되어, 권리자(피해자)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.**

기술유출, 영업비밀, 특허침해, 부정경쟁, 손해배상, 형사고소, 민사소송, A~Z 수행경력

T. 02-591-0657 E. [kkh@kasanlaw.com](mailto:kkh@kasanlaw.com) H. [www.kasanlaw.com](http://www.kasanlaw.com)